

주주 귀하

제7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4년 5월 30일(금요일) 오전 10:00시
2. 장 소 :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983 (주)유유제약 제천공장 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 - 1) 보고사항
 - 감사보고
 - 영업보고
 - 2) 결의사항
 - 제1호 의안 : 제74기(2013년 4월 1일 ~ 2014년 3월 31일)
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1주당 배당금액: 보통주 180원, 구형우선주 190원, 신형우선주 190원
※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전원이
동의할 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진행
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사내이사 3명, 사외이사 1명)
 - 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(14억원)
 - 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(2억원)
 - 제6호 의안 : 임원 퇴직금지규정 변경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
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을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
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직접
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
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 - 직접행사: 주총 참석장, 신분증
 - 대리행사: 주총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2014년 5월



(주)유유제약



대표이사 조구희(직인생략)

정관 일부 변경 (안)

현 행	변 경(안)	비 고
<p>제13조의 2 [전환사채의 발행]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 중 5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1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	<p>제13조의 2 [전환사채의 발행]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가액 중 29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1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	- 문구수정
<p>제14조 [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]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5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1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</p>	<p>제14조 [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]</p> <p>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29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10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</p>	- 문구수정
	<p>부칙 1.이 정관은 2014년 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</p>	

이 사 선임의 건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 추 천 인	주 요 약 력	회사와의 최근3년간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비 고
사 내 이 사	유승필	1946.09.23 이사회	미국콜롬비아대학 국제경영학 박사 (현)유유제약 대표이사 회장	없 음	본 인	재선임
사 내 이 사	최인석	1953.10.02 이사회	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(현)유유제약 사장	없 음	없 음	신임
사 내 이 사	박경립	1953.08.07 이사회	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(현)유유헬스케어 사장	없 음	없 음	신임
사 외 이 사	이의경	1962.12.14 이사회	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약학 박사 (현)성균관대학교 약대학 약학과 교수	없 음	없 음	신임

※ 정기주주총회장 약도

○ 대중교통: 제천역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후 택시 이용

○ 자 가 용: 서울->중앙고속도로->제천IC(제천, 충주방면)->5번국도->제천교차로(우측 단양방면)
->남부순환로->쥬유유제약 공장

찾아오시는길



임원퇴직금규정 변경(안)

현 행	변 경(안)	비 고
제1조 [목적]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유유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[목적] 이 규정은 주식회사 유유제약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문구수정
제2조 [임원의 정의]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.	제2조 [임원의 정의]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으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.	-문구수정
제5조 [퇴직금]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보수액에서 "별표" 각 재임 기간별 지급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	제5조 [퇴직금]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급여에 "별표" 각 재임 기간별 지급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	-문구수정
제6조 [지급일] ① 퇴직금은 퇴직수속을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.	제6조 [지급일 및 지급방법] ① 좌동 ② 퇴직금은 통화뿐만 아니라 예금 및 증권,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.	-문구 신설
제7조 [특별공로금] 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전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이 경우 특별공로금은 당해 퇴직금의 50/100을 초과할 수 없다.	제7조 [특별공로금] ①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전 제5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② 좌동	-문구수정
	부칙 이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(주주총회 승인일 : 2014년 5월30일)	